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19. 4. 16.

공 주 시



1. 통지기간 : 2019. 4. 16. ~ 2019. 4. 30.
2. 통지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04. 16.
4. 말소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이*용	건축물 위 치	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117
	주 소 (대상상주소)	쌍신동 376	건축물 현 황	주1 1층 벽돌 양곡보관창고 330m ²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	